#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7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11월 3일

# Ⅱ. 제안사유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

# Ⅲ. 주요내용

#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2024년도 계획(안)	2023년도 계획	증 감 액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7,318,207	15,510,375	1,807,83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057,826	665,653,163	34,404,66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50,734	434,112	16,62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5,422,268	131,224,774	△35,802,506	
합계	2,081,160,858	2,155,434,605	△74,273,747	

##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70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52조¹)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운용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학 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안전공제회')<sup>3)</sup>가 맡고 있습니다.

<sup>1)</sup>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sup>2)</sup>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sup>3)</sup>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 회를 설립한다.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sup>4)</sup>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법 제8조<sup>5)</sup>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나. 기금 총괄

○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지원금 51억원, 예치금회수 33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7백만원, 기타 87억 6천 1백만원 등 173억 1천 8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1억 8천 5백만원, 인력운영비 15억 5천 7백만원, 기본경비 2억 6천 9백만원, 예치금 13억 7백만원입니다.

## [표-1] 2024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	김계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4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 감 (C=A-B)	
계	17,318,207	15,510,375	1,807,832	계	17,318,207	15,510,375	1,807,832	
기타 지원금	5,100,000	0	5,100,000	비용자성 사업비	14,184,877	10,401,230	3,783,647	
기부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1,557,055	1,525,564	31,491	
예치금	3,310,631	7,311,548	△4,000,917	기본경비	269,266	272,950	△3,684	

<sup>4)</su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sup>5)</sup>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점	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4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 감 (C=A-B)		
회=	수									
이자=	수입	146,900	170,000	△23,100	예치금	1,307,009	3,310,631	△2,003,622		
기	타	8,760,676	8,028,827	731,849	기 타	0	0	0		

#### 다. 수입계획

○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173억 1천 8백만원으로, 기타지원금 51억원, 예치금회수 33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7백만원,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82억 4천 8백만원, 소방사업수익 2억원 등) 87억 6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155억 1천만원) 대비 18억 8백만원(11.7%)이 증가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수입계획액의 증가는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액(73억 1천 2백만원) 대비 40억 1백만원(△54.7%)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원금 51억원이 수입계획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 [표-2]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하고	2 2	스이애	전년도	증 감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수입액	증감액	비율	
	계	17,318,207	15,510,375	1,807,832	11.7%	
기타지원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용도 지원금	5,100,000	0	5,100,000	100%	
	소 계	3,310,631	7,311,548	△4,000,917	△54.7%	
  예치금회수	사무국 임차보증금	248,347	248,347	0	0%	
I 에시ㅁ되구	학교안전공제기금 이월금	1,907,804	5,661,118	△3,753,314	△66.3%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증	감
87	세구네틱	十日当	수입액	증감액	비율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81,675	107,655	△25,980	△24.1%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072,805	1,294,428	△221,623	△17.1%
이자수입	이자수입	146,900	170,000	△23,100	△13.6%
	소 계	8,760,676	8,028,827	731,849	9.1%
	공제료 수입	8,247,736	7,392,576	855,160	11.6%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16,940	15,991	949	5.9%
기타수입	소방사업 수익	200,000	500,000	△300,000	△60.0%
	학교폭력피해구상금	275,000	101,760	173,240	170.2%
	법인세 환급금	20,000	18,000	2,000	11.1%
	카드포인트	1,000	500	500	100 %

# 1) 기타지원금

○ 동 수입액 중 기타지원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치료비를 위한 요양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보조 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 별회계 예산안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3] 2024년 보조금 필요액 산출이

구분	전년도말 기금잔액	공제료 수입	이자 등 수입	참여자 공제료	전입금	기타	총액
수입액	1,690,181	8,215,297	0	16,940	200,000	0	10,122,418
지출액	9,179,973	3,633,206	643,732	193,107	1,303,316	272,950	15,226,285
수입액	4,076,106	3,633,206	643,732	193,107	1,303,316	272,950	10,122,418
차액	5,103,867						5,103,867

<sup>6) 「</sup>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안전총괄담당관 (2023.9.)

○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보유기금은 32억 5천만원으로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제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표-5 참조), 2월부터는 기금잔액이 적자로(-)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되어 민간경상 보조를 하려는 것입니다.

# [표-4] 보유기금 변동 내역기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A)	지출액 (B)	수지차액 (A-B)	교육청 지원액	보유기금
2017	7,966,043	6,970,580	995,463	1,672,000	10,686,065
2018	5,868,531	7,896,972	△2,028,441	0	8,657,624
2019	6,608,752	8,247,123	△1,638,371	0	7,019,253
2020	7,264,625	6,221,581	1,043,044	0	8,062,297
2021	7,070,592	6,661,103	409,489	0	8,471,786
2022	7,355,669	8,515,908	△1,160,239	0	7,311,547
2023	8,198,827	12,258,743	△4,059,916	0	3,251,631

# [표-5] 2024년 월별 기금 추계8)

(단위: 천원)

		수입			지	출		잔액
구분	기금 (A)	<i>공</i> 제료수입 (B)	야수입 등 (C)	공제사업 (D)	예방사업 (E)	인건비 (F)	운영비 (G)	(A+B+C)- (D+E+F+G)
1월	1,690,181	0	216,940	1,121,409	16,092	108,610	22,746	638,264
2월	638,264	0	0	1,121,409	16,092	108,610	22,746	△630,593

○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 지속적인 기금 감소로 인해 서울 시교육청이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천 2백만원을 본예산에 편 성하여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발생에 따른 등교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

<sup>7) 「</sup>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안전총괄담당관 (2023.9.)

<sup>8) 「</sup>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안전총괄담당관 (2023.9.)

니다. 이는 금번 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공제료 수입(82억 6천 5백만원)에 비해 공제급여의 지급(130억 5천 6백만원)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조성액 대비 집행액 수지불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자체노력은 미미한 바, 소방수익 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2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자체수입 전체 조성액의 약 2.2%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이러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형적 재정운영의 모습은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현재까지 기금 건전성 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교육청의 경상보 조에 의존하고 있는 바, 안이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금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보조금 51억원은 2023년 수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감소대응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양급여 예상 부족분을 목 적으로 편성된 것이나.

동 기금운용계획안(9쪽 참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요양급여건의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요양급여 증액분은 실질적으로 26억 1천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서울시교육청에 51억이라는 과 도한 경상보조금을 요청한 것은 요양급여비 부족분을 넘어서 다른 사 업비의 보전을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있는 바, 동 경 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공제료 수입' 및 '소방사업수익', '학교폭력구상금 회수'등 사실상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으로, 2024년도 총 87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80억 2천 9백만원) 대비 9.1%(7억 3천 2백만원) 증가되었는바, 이는 '공제료 수입'이 11.6%, '학교폭력피해구상금'이 170%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공제료 수입' 은 8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73억 9천 3백만원) 대비 8억 5천 5백만원(11.6%)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제료 산정기준에 대한 고시액의 인상과 가산분 10%를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 [표-6] 교육부고시 공제료9

(단위: 원)

구분	2024년 공제료	2023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3,600	3,100		
초등학교	4,700	4,800		
중학교	11,300	9,800		
고등학교	16,100	14,00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3,960	5,170	12,430	17,710	9,820
(고시공제료 대비 인상률)	(10%)	(10%)	(10%)	(10%)	(10%)

○ 그러나 공제료 수입을 위한 학생수 추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학생수(830,656명) 를 기초로, 학교안전공제회는 '2023~2027 중기서울교육재정계

<sup>9)</sup> 교육부고시(제 2023-35호, 2023. 11. 2). '2024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획'의 학생수(823,681명)를 기초로 하고 있어 6,975명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공제료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동 기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법」 상의 '교육활동참여자¹0)'로 인정하여 2022년부터 공제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금번 수입액은 전년대비 13.6%(2천 1백만원) 증 가한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배움터지킴이' 공제료 단가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적시된 금액은 인당 17,710원인데 비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인당 16,560원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배움터지킴이의 공제료 수입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소방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수익사업으로<sup>11)</sup> 2017년도에 수입금 1억 7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익이 증대되어 왔고, 2023년에는 19억 4천 9백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그 수익이 20억 5천 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sup>10) 「</sup>학교안전법」제2조(정의)

<sup>5. &</sup>quot;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sup>11) 「</sup>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sup>1.</sup>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sup>2.</sup>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sup>3.</sup>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표-7] 소방시설안전점검사업 수입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계	계약 학교	전년도 이월액	수입		7	[]출		수지차	다음연도 이월액
연도	수	) (A)	(B)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D=B-C)	(E=A+D)
2017	408	96,323	1,070,440	120,000	320,580	577,408	1,017,988	52,452	148,775
2018	476	148,775	1,262,084	120,000	392,758	744,595	1,257,353	4,731	153,506
2019	534	153,506	1,498,646	120,000	379,777	820,397	1,320,174	178,472	331,978
2020	577	331,978	1,658,565	160,000	394,221	939,070	1,493,291	165,274	497,252
2021	592	497,252	1,748,672	271,000	393,442	969,935	1,634,377	114,295	611,547
2022	611	611,547	1,847,735	160,000	419,836	1,063,511	1,643,347	204,388	815,935
2023	620	815,940	2,042,180	500,000	523,907	1,230,961	2,254,868	-212,688	603,252
2024	550	700,000	2,056,000	200,000	575,710	1,391,772	2,167,482	-111,482	588,518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의 경우 공제회 조직에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기금 전출금 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기금 전출금 규모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억원이(60%) 감소된 2억원으로 전출금 규모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업대상인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및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계약학교 수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시설별 전담기사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수익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소방수익과 관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는 바, 기금전출금을 소방 수익 이월액의 일정 비율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전출금의 안정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 이외에 '교원안심·여행자공 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동 사업의 수입액은 8억 3천 2백만원이고, 그 중 사업비 5억 2천 1백만원, 운영비 1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의 예치금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 [표-8] 2024년도 교원안심·여행자공제사업 예산

(단위: 천원)

				세	입				이월금		
<b>-</b>	구분	교원안심	여행자	이자	구상금	이월금	소계	사업비	운영비	소계	
		공제료	공제료*	수입	(교원)	이끌급	꾸게	사람비	포장미	고세	(예치금)
2024	예산액	120,000	500,000	5,600	5,000	201,490	832,090	521,340	10,300	531,640	300,450
2024	비율	14.4%	60.1%	0.7%	0.6%	24.2%	100%	62.7%	1.2%	63.9%	36.1%

○ 이중 교원안심공제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팬더믹 종료 후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2023년 교원안심공제 지출액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지만, 수학여행 등이 증가하여 여행자공제사업은 수익성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여행자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가입 학교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사업 확장을 통한 다양한 수익 증대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사업의 경우 소방사업과 같이 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바, 공제사업으로 일정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통합적 관리를 위해 발생 수입을 동 기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사업, 교원안심·여행자공제사업 외에 공제회 정관<sup>12)</sup>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

<sup>12)</sup>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sup>1.</sup>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sup>2.</sup>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sup>3.</sup>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sup>4.</sup>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굴·확대하여 기금 수입 증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예치금회수

○ '예치금 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4년도 수입액은 33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 치금 회수(73억 1천 2백만원) 대비 40억원(△54.8%)이 감소하였 습니다.

#### [표-9] 예치금회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액(%)
예치금회수	3,310,632	7,311,548	△4,000,917(△54.8%)

#### 라. 지출계획

-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공제사업 134억 3천 9백만원, 예방사업 1억 9천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3천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5억 2천 6백만원, 재무활동 13억 7백만원, 기관운영 2억 6천 9백만원, 인건비 15억 5천 7백만원 등 17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2023년(155억 1천만원) 대비 18억 8백만원(11.7%)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 동 기금 지출의 주된 증액 사유는 공제사업 지출이 전년도(96억 4천 1백만원)보다 37억 9천 8백만원(39.4%)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sup>5.</sup>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써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sup>6.</sup> 교원의 업무 중 배상책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급 등 교원의 직무수행상 안전 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sup>7.</sup>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표-10] 2024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증	감
		항목	24년 시출식 (A)	23년 시출식 (B)	증감액 (A-B)	증감율
		공제급여 지급	13,056,400	9,160,012	3,896,388	42.5
		심사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4,260	40,200	△5,940	△14.8
		보상심사위원회	16,800	16,800	0	-
	   공제	소송업무 수행	226,940	214,940	12000	5.6
학교	- 등세 사업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비용지원	25,500	25,500	0	-
안전망 구축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9,200	123,200	△104,000	△84.4
		중앙회 분담금	60,000	60,000	0	0.0
		소계	13,439,100	9,640,652	3,798,448	39.4
	예방사	ОТО	189,607	386,214	△196,607	△50.9
	학교안	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30,180	26,980	3,200	11.9
	학교폭	력피해지원	525,990	347,384	178,606	51.4
		보유준비금	411,199	2,156,151	△1,744,952	△80.9
	재무 활동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 원예치금	53,995	81,675	△27,680	△33.9
교육 일반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841,815	1,072,805	△230,990	△21.5
글인	기관	업무추진비	23,800	23,800	0	-
	운영	운영비	245,466	249,150	△3,684	△1.5
	소 계		1,576,275	3,583,581	△2,007,306	△56
인건비	인건비		1,557,055	1,525,564	31,491	2
		계	17,318,207	15,510,375	1,807,832	11.7

# 1) 공제사업

○ '공제사업'은 학생 등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사업 총지출액(134억 3천 9백만원)의 97.1% 는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공제급여 지급'(130억 5천 6백만원)

은 전년도(91억 6천만원) 대비 38억 9천 6백만원(42.5%)이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처럼 동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공제급여 지급 중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표-11] '공제급여 지급' 지출 계획

(단위: 천원)

	Ġ	강목	산출기초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요양급여	352,000원 x 24,000건	8,694,400	3,896,388	2,614,000
공제	공제급여	장해급여 1)직접청구 2)소송청구	70,000,000원 x 10건 132,000,000 x 13건	2,416,000 700,000 1,716,000	2,424,012 806,890 1,617,122	△8,012 △106,890 98,878
사업	지급	간병급여	16,000,000 x 1건	16,000	16,000	0
		유족급여	630,000,000 x 3건	1,890,000	600,000	1,290,000
		위로금	40,000,000 x 1건	40,000	40,000	0

○ 먼저 '요양급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학교내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요양급여 청구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증대됨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동 사업비를 전년 대비 26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86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표-12] 요양급여 예산 증액 현황

аг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연도	산출기초	금액(천원)	<b>(B-A)</b> (단위: 천원)	(%)
2023 (A)	381,490원 x 15,937 건	6,080,000천원	2 61 4 400	420/
2024 (B)	352,000원 x 24,700 건	8,694,400천원	2,614,400	43%

- 요양급여 지급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23년의 경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2022년 대비 45%가 증가하였는바, 올해는 2023년 대비 30%의 추가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요양급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코로나 완화 등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유족급여'는 18세 학생,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24년 상반기 보통인부 평균임금 예정액(일 16만원)을 적용하고, 소송진행 중인 건을 포함해 총 3건으로 지출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전년 대비 1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8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별도 문 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표-13] '공제사업'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공제급여 지급	13,056,400	9,160,012	3,896,388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4,260	40,200	△5,940
	보상심사위원회	16,800	16,800	0
   공제사업	소송업무 수행	226,940	214,940	12,000
	손해방지 및 긴급조치 비용 지원	25,500	25,500	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9,200	123,200	△104,000
	중앙회 분담금	60,000	60,000	0

# 2) 예방사업

-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3억 8천 6백만원) 대비 1억 9천 7백만원(△50.9%) 감소한 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안전

교육 과정 운영'에 6천 2백만원,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에 8백만원,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에 7천 4백만원, '학교안전자문단운영'에 2천만원,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연구'에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표-14] 예방사업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C=A-B)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61,900	45,250	16,650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	8,400	58,434	△50,034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	74,307	217,040	△142,733
학교안전자문단운영	20,000	50,490	△30,490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업무	25,000	15,000	10,000

- 우선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내 위험성 평가, 시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관리자에 대한 시연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서 시연교육 콘텐츠 제작(1천 4백만원)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은 전년도 학교 안전 사고 관련 사례집 및 통계집이 완성됨에 따라 교재편집비(4천 4백만원) 등의 절감으로 지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 그리고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 사업은 전년도 웹툰 제작(1천 5백만원) 및 유튜브 콘텐츠 개발(3천만원)이 완료되어 제작비가 감소하였고,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의 경우 참가율이 낮아 사업규모를 초·중·고 각각 3회로 추진했던 것이 2건으로 축소하여 운영할계획에 있어 지출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 다음으로 '학교안전자문단운영'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적어 2023년도 집행율이 20%에 그쳐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2024년의 지출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신사업 및 조직 개선 연구' 사업의 2024년도 지출예상액 증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공제사업 개발 및 조직 개선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2천 5백만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23년도 학교 안전교육 계획(안)<sup>13)</sup>에 따르면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내실화를 학교안전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웹툰, 유튜브 콘텐츠의 활용도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학교폭력 피해지원

○ 학교폭력 피해지원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공제회가 우선 지원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 상권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3억 4천 7백만원) 대비 1억 7천 9백만원(51.4%) 증가한 5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심리상담비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표-15]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처원)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C=A-B)
싫구포검	가. 심리상담비	260,000	180,000	80,000
학교폭력 피해지원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240,000	141,394	98,606
구상권 행	사 경비	25,000	25,000	-
자문료		990	990	-

<sup>13) 「2023</sup>년도 학교 안전교육 계획(안)」(정책·안전기획관, 2023.2.)

○ 우선 '심리상담비'의 2024년도 지출예상액 증가는 심리치료비 지원건수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50.5%로 전년도(130건) 대비 50.5% 증가한 200건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표-16] '심리상담비' 사업 현황

구분	지급건수(건)	지출금액(원)	지급건수 증감율	지급금액 증감율
2021년	88	75,710,110	-	-
2022년	109	88,806,480	23.9%	17.3%
2023년	103	174,899,190	77.1%	96.9%
3개년 평균	130	870,000	50.5%	57.1%

○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 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사업의 경우 치료비 지원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 40%로 증가하였는 바, 이를 기초로(65건) 2024년에 80건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표-1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사업 현황

구분	지급건수(건)	지출금액(원)	지급건수 증감율	지급금액 증감율
2021년	37	56,579,060	-	-
2022년	59	86,833,030	59.5%	53.5%
2023년	65	178,065,090	26%	53.5%
3개년 평균	54	1,913,000	42.7%	39.5%

○ 그러나 상기한 2024년 지급건수 40% 증가 예측치는 코로나19 해 제 직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 지급건수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는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전년도를 기준으로 감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예치금

## [표-18]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C=A-B)
ᆸᄋᄌᄞᆜᄀ	가. 보유준비금	162,852	1,907,804	△1,744,952
보유준비금 	나. 임차보증금	248,347	248,347	-
학교안전사고 상담지원예차		53,995	81,675	△27,680
학교폭력피혀	배지원금예치금	841,815	1,072,805	△230,990

○ 동 기금의 예치금은 1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33억 1천만원) 보다 20억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2024년 지출계획에서 공제료 지출이 증가하여 보유준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표-19] 최근 5년 보유준비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계획)
보유준비금	7,019	8,062	8,471	7,311	3,310	1,307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2022년은 학교 등교일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감소됨에 따라 공제료 수입대비 공제 급여 지출이 적어 보유준비금이 높았던 반면, 2022년 이후에는 전면 등교로 인해 공제급여 지급이 급증하여 보유준비금 적립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준비금은 전전년도이전 최근 3년간의 공제사업 지출액 평균의 1.2배 이상을 순자산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에는 13억원을 적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적립기준액 76억 37백만원

에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 [표-20] '기관운영비'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C=A-B)
기교으여비	가. 업무추진비	23,800	23,800	-
기관운영비	나. 운영비	245,466	249,150	△3,684
인건비		1,557,055	1,525,564	31,491

- '기관운영비' 는 전년도(2억 7천 3백만원) 대비 370만원(△1.4%)
  감소한 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인건비'는 전년도(1억 5천 3백만원) 대비 3천 1백만원(2.1%) 증가 한 2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 감액하여 공제회의 재정건전 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추진비 중 이사장(비상임), 사무국장(상임)이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 게 편성하여 기관을 대표하는 임원들의 공제회 운영 개선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인건비'의 경우 2024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 증액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공무원 인상율(2.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제회 기금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의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ARIMA 시게열 분석결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추계된 인건비 증가율은

연 평균 6.7%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원 인상율 고시(1.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sup>14)</sup>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소진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인상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공무원 보수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월 최대수령가능한 총액은 일반직공무원보다 낮으나시간당 단가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97.5~253.9%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바 업무량을 고려한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표-21] 2023년 일반직공무원, 학교안전공제회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위: 원)

구분	일반직공무원 (시간당)	공제회 직원 (시간당)
5급	14,692	52,000
6급	12,531	40,000
7급	11,319	31,000
8급	10,162	25,000
9급	9,620	19,000

<sup>14) [</sup>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22-3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표-22] 2024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출계 획	(2111 22)
수입 항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증감	지출 항목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증감
합 계	700,057,826	665,653,163	34,404,663	합 계	700,057,826	665,653,163	34,404,663
교특회계 전 입 금	0	200,000,000	△200,00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330,000,000	0	330,000,000
예 치 금 회 수	665,653,163	465,099,847	200,553,316	예 치 금	370,057,826	665,653,163	△295,595,337
이자수입	34,404,663	553,316	33,851,347	기본경비	0	0	0

#### 가. 수입계획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입니다.
- 동 기금의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656억 5천 3백만원, 이자수입 344억 5백만원을 포함한 7,000억 5천 8백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바,

교특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액인 예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자수입은 344억 5백만원으로 2023년도 운용계획안 이자수입 5억 5천 3백만원보다 33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조성액(4,651억원)과 2023년도 조성액(2,005억 5천 3백만원)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을 통해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3.3%~3.6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지출로 예치금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기금 의 이자 수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바, 기금 이자수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적극적인 이자 협상을 통해 이자 수입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23] 기금 이자수입 산출 내역

(단위: 천원, %, 일, 천원)

				(E 11	. 인권, 70, 글, 인권)
구분	예치금액	예치금리	예치기간	발생이자	비고
	7,594	3.62	726	547	
2022년도 조성액 (465,099,846천	130,000,000	3.67	573	7,489,816	2024.7.15. 교특 전출 가정
원)	335,092,252	3.67	573	19,305,996	
	335,092,252	3.30	159	4,817,066	
2023년도 조성액 (200,553,315	200,000,000	3.30	153	2,766,575	2024.1.15. 교특 전출 가정
천원)	553,315	3.30	493	24,663	
계				34,404,663	

- 지출시기: ('24. 1월) 2,000억원, ('24. 7월) 1,300억원 지출 가정
- 적용금리
  - 정기예금 해지 전 : 3.30% ~ 3.67% 적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별표 1]에 따르면 만기 경과후 해지시까지 금리는 기존 정기예금 금리 100% 적용됨에 기존 가입당시 금리 적용
  - 정기예금 해지 후 재가입시 : 3.30% 적용 (2023. 10월 기준 금리)

#### 나. 지출계획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0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한 예비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인바, 동 지출계획은 금번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예산이 13.4%(1조 7,309억 8천 5백원) 감소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서 교육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제13조<sup>15)</sup>에 따라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사유가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7, 2023.10.13.) 의회에 제출<sup>16)</sup>되었는바, 동 기금운용계획안 지출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해당 기금의 사용 조건과 범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 총액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17)하고 있습니다.

<sup>15)</sup>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up>1.</sup>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sup>2.</sup>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sup>3.</sup>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sup>16) 「</sup>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1입 $\cdot$  세12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17)</sup>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생 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이 본 예산안 세입규모보다 적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표-24] 서울시교육청 기금 사용을 위한 검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A)	2024**(B)	(B-A)
세입 결산액	12,202,397	14,738,178	12,813,617	13,251,397	10,830,536	△2,420,861

- \* 2023년 세입액: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의 2023년도 세입 전망액
- \*\* 2024년 세입액: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3,300억원 제외
  - 그러나 동 조례는 기금 사용요건을 단지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세입금액이 본예산 기준인지 결산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기준 설정에 따라 기금 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의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을 결산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세입결산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결산액이 아닌 추정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바, 기금편성의 타당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의 세입 구조상 세입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결산을 반영한 세입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기금 지출을 위해 예산안의 세입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안정화 기금 조례의 지출 기준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동 기금 설치·운용의 법적 기반인 해당 조례의 지출

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sup>1.</sup>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sup>2.</sup>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 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sup>3.</sup>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sup>4.</sup>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생태전환교육기금

#### 가. 기금 개관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내 학생 등에게 시행하는 생태전환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2021년 조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기금은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이라는 단일 사업에만 지출되고, '농촌유학' 사업예산이 본예산과 기금에서 이중 으로 집행되는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18)
- 또한, 기금 조성의 법률적 근거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이 낮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기금과 위원회 등이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폐지도 추진되었습니다.19)
- 이에 2023년 5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5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7월 26일 기존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재하고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며,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sup>18) 「2023</sup>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383, 2022.11.1. 교육감 제출)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은 삭제되었고, 이후 동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sup>19)</sup>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2.11.29.),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46-51쪽;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3.7.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결을 통해 9월 17일에 확정 조례를 이송하였습니다.

○ 이후 2023년 9월 27일 이송된 조례에 대한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의거하여 「서울 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시행하였으나<sup>20)</sup>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동 폐지조례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sup>21)</sup>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표-25]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 개요

일자	주요 내용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발의
2023. 3. 30.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2023. 6.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회부 및 입법예고 진행
2023. 7. 3.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2023. 7. 5.	조례안 본회의 심사·의결
2023. 7. 6.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7. 26.	조례안 재의 요구 (교육청 → 시의회)
2023. 9. 15.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재의결
2023. 9. 18.	확정조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9. 27.	폐지조례 의장 공포
2023. 10. 4.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
2023. 10. 4.	(재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2023. 10. 17.	대법원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 따라서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대법원판결 전까지 조성 근거가 되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 또는 제·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금 폐지 절차 전반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sup>20) 「</sup>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번호 제8978호, 2023.9.27. 공포·시행) 21) 대법원 2023. 10. 17. 선고 2023쿠10(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관련

#### 나. 수입 지출 계획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3년까지 총 4억 3천 4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2024년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4억 5천 7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3천 4백만원과 이자 수입 1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12조제1항에<sup>22)</sup> 따른 기금운 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에 해당하는바, 수입 계획에서 별도 문제 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동 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 4억 5천 1백만원으로, 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지출계획은 앞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동 기금의 폐지 절차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소송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에 기인하는바, 지출계획에서도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이 소송 종결 시까지 별도의 지출 없이 운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23)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성

<sup>22) 「</sup>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sup>1.</sup>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sup>2.</sup>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sup>3.</sup> 그 밖에 수입금

<sup>23) 「</sup>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2023.7.28. 시행)」에 따르면,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다. 기타

- 한편, 2024년 생태전환교육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사업계획의 내용과 관계 없이 기금이 존재하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sup>24)</sup>

동 기금의 운용계획안이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을 통해 의안 제출 이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함께 동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시의회 제출 이후에 수립됨에 따라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 운용에 따른 세입 등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up>24) 「</sup>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가. 기금총괄

○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sup>25)</sup>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sup>26)</sup>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동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2024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4억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조 2,364억 9천 2백만원 등 1조 2,679억 1천 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1,072억 6천 5백만원, 예치금 1조 1,606억 4천 4백만원, 기관운영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sup>25)</sup>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sup>26)</sup>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 [표-26] 기금수지 총괄

(단위: 처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 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합 계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교특회계 전입금	0	231,500,000	△231,5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7,265,104	106,118,276	1,146,828
예치금 회수	1,236,491,505	1,072,395,541	164,095,964	기관운영	3,000	2,400	600
이자수입	31,420,318	38,716,640	△7,296,322	예치금	1,160,643,719	1,236,491,505	△75,847,786

#### 나. 수입계획

- 2024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예치금 회수 1조 2,364억 9천 2백만원, 이자수입 314억 2천만원입니다.
- 2021년 동 기금이 설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공간혁신', '교육환경개선', '민간투자상환'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도에 3,184억 1천 1백만원, 2022년에 9,678억 4천 2백만원, 2023년도에 2,315억원의 예산을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4년도에는 교육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당해 연도 추진 가능한 물량(69동)만큼만 예산(673억 8천 2백만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의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만 편성, 기금으로는 전출하지 않았는 바, 동 기금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 [표-2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연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교육환경 개 선	민간투자 상 환	소계		
2021	88,411,000	0	230,000,000	0	318,411,000		
2022	161,980,000	59,020,000	0	746,841,767	967,841,767		
2023	133,000,000	98,500,000	0	0	231,500,000		
2024	0	0	0	0	0		
합 계	383,391,000	157,520,000	230,000,000	746,841,767	1,517,752,767		

○ 한편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72억 9천 6백만원 감액된 314억 2천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금조성액이 감소되어 이자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동 기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리 적용되고<sup>27)</sup> 있고, 현재 2024년도 상반기에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3개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치금액 및 기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율 현황

예치 은행	예치 상품	이자 <del>율</del> (%)	예치금액 (원)	예정 이자수입(원)	예정 예치기간
농협	정기예금	3.72	2,000,000,000	74,603,830	2023. 4. 7. ~ 2024. 4. 7.(12개월)
농협	정기예금	3.28	10,000,000,000	247,123,280	2023. 4. 17. ~ 2024. 1. 17.(9개월)
농협	정기예금	3.40	39,534,928,130	670,252,420	2023. 8. 31. ~ 2024. 2. 29.(6개월)
농협	정기예금	3.50	52,132,463,820	1,829,635,230	2023. 11. 13. ~ 2024. 11. 13.(12개월)
	2024년도 혀	해지 예상 이자=	수입	2,821,614,760	

<sup>27)</sup>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 [표-29]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 ,
장	수 입 과 목 장 관 항 목		수 입 과 목목	산출기초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A-B)
					. ,	( )	
[50	000]	내부	거래		0	231,500,000	△231,500,000
	[510	000]	전입금		0	231,500,000	△231,500,000
		[51	100]전입금		0	231,500,000	△231,500,000
	[51102]교육비특별호계전입금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231,500,000	△231,500,000
[40	[40000]기타				1,236,491,505	1,072,395,541	164,095,964
	[42000]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1,236,491,505	1,072,395,541	164,095,964
		[42	100]예치금회수		1,236,491,505	1,072,395,541	164,095,964
	[42101]예치금회수		[42101]예치금회수	1,236,491,505,000원 ×1식	1,236,491,505	1,072,395,541	164,095,964
[20	000]	자체	수입		31,420,318	38,716,640	△7,296,322
	[24000]이자수입		이자수입		31,420,318	38,716,640	△7,296,322
		[24	100]이자수입		31,420,318	38,716,640	△7,296,322
			[24101]예금이자수입	31,420,318,000원×1식	31,420,318	38,716,640	△7,296,322
	•	•	수입 합계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 다. 지출계획

- 2024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1조 2,679억 1천 2백만원으로 민간투자사업상환 중 BTL원금(임대료)이 634억 3천 6백만원, BTL이자가 137억 7천 4백만원, BTL 운영비가 300억 5천 5백만 원이고, 예치금은 1조 1,606억 4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동 기금의 BTL 상환금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BTL 방식으로 신·개축 등을 추진한 141개교<sup>28)</sup>의 원금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

<sup>28)</sup> BTL상환 대상학교의 사업연도

사업 연도	학교수 (%)
2005년	7 (5.0%)
2006년	66 (46.8%)

#### 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2022년도에 향후 2032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BTL 총 임대료 7,470억을 동 기금(재무활동)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141개교의 '2024년도' 임대료(이자포함) 및 운영비 1,072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30] BTL 총 지급금액

(단위 : 억원, 2021. 12. 31. 기준)

구분		기 지급액(A)		지급 예정액		총지급예정액
		(2007~2021년) 2021년까지	2022년(가)	2023년 이후(나)	소계 (B=가+나)	중시합에정력 (A+B)
OLEII =	원금	2,200	241	1,742	1,983	4,183
임대료 (교부금)	이자	1,842	55	188	243	2,085
	소계	4,042	296	1,930	2,226	6,268
OLEILT	원금	3,277	377	3,064	3,441	6,718
임대료 (자체)	이자	2,653	85	321	406	3,059
	소계	5,930	462	3,385	3,847	9,777
OLEILT	원금	5,477	618	4,806	5,424	10,901
임대료 (계)	이자	4,495	140	509	649	5,144
(21)	소계	9,972	758	5,315	6,073	16,045
운영	Η	3,011	274	2,155	2,429	5,440
합기	4	12,983	1,032	7,470	8,502	21,485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항목을 '기관운영'비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업 연도	학교수 (%)
2007년	61 (43.3%)
2008년	4 (2.8%)
2009년	3 (2.1%)
전체	141 (100.0%)

- 그러나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 용계획 수립기준」의 기금 지출계획 작성기준 따르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수당 등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기본경비'로 분류되고 있는바, 동 기금 지출계획의 위원회수당 편성항목은 '기관운영'이 아닌 '기본경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촉직의 인원수는 「지방기금법」제13조 등에 따른 민간전문가 1/3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 문제는 없으나, 위촉위원의 구성을 살펴 보면, 위촉위원 중 전직 교육청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포함하도록 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이미 당연직으로 교육청 직원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민간전문가로 전직 교육청 직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육청은 위원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sup>29</sup>.

# [표-3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설○○	남	부교육감	
   당	위원	박○○	남	교육행정국장	
연	위원	-	-	기획조정실장	11.1. 현재 공석
직	위원	정○○	남	예산담당관	
	위원	김〇〇	남	교육시설안전과장	

<sup>29)</sup> 교육부의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민간전문가로서 전직공무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지적이 있었음.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부위원장	700	여	서울시의회 의원(성동2) 행정자치위원회, 2기 예결위	
	위원	성○○	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교수	1기
위 촉	위원	신00	여	회계사, 한영회계법인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위원회 위원	1기
직	위원	양○○	남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	1기
	위원	정○○	남	(前)교육행정국장, 정독도서관장	1기
	위원	강○○	남	건축사사무소 세움 대표	

# [표-32] 202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7	디 출	· 계	획			′24년	′23년	증감
분 야	부 문	정 책	단 위	세 부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지출액 (A)	지출액 (B)	(A-B)
교육	구 국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교육	욱일	반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교육	국행?	정일	반			3,000	2,400	600
			기관	<u> </u> 우	ලි			3,000	2,400	600
				위원	원회운영			3,000	2,400	600
					위원회수당	210 운영비	150,000원×5명×4회	3,000	2,400	600
		재드	구활 <del>.</del>	동				1,267,908,823	1,342,609,781	△74,700,958
			지능	방채·	상환및리스료			107,265,104	106,118,276	1,146,828
				민건	<u>'</u> 上투자사업상환			107,265,104	106,118,276	1,146,828
					BTL원금	510 상환지출	63,435,517,000원×1식	63,435,517	62,974,268	461,249
					BTL이자	510 상환지출	13,774,375,000원×1식	13,774,375	13,353,450	420,925
					BTL운영비	210 운영비	30,055,212,000원×1식	30,055,212	29,790,558	264,654
			예치	디금				1,160,643,719	1,236,491,505	△75,847,786
			예치금		니금 지금			1,160,643,719	1,236,491,505	△75,847,786
					예치금	520 예치금	1,160,643,719,000원×1식	1,160,643,719	1,236,491,505	△75,847,786
			지출	합	계			1,267,911,823	1,342,612,181	△74,700,358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2016년 7월 7일 시행된「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에 따른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 축소 및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완료 기간까지의 기금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0년 12월 16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 동 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34억 6천 8백만원과 이자수입 19억 5천 4백만원 등 총 954억 2천 2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18억원 및 예치금 536억 2천 2백만원 등 총 954억 2천 2백만원입니다.

# [표-33] 기금수지 총괄

(단위: 처원)

							<u> </u>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95,422,268	131,224,774	△35,802,506	합 계	95,422,268	131,224,774	△35,802,506
교특회계 전입금	-	32,939,059	△32,939,059	비용자성 사업비	41,799,993	37,756,314	4,043,679
기부금	-	-	-	융자성 사업비	-	-	-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 감 (C=A-B)
융자금 회수	-	-	-	인력 운영비	-	-	-
예치금 회수	93,468,460	97,451,875	△3,983,415	기본 경비	-	-	1
이자수입	1,953,808	833,840	1,119,968	예치금	53,622,275	93,468,460	△39,846,185
기타	-	-	-	기타	-	-	-

#### 나. 수입계획

○ 2024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954억 2천 2백만원이며, 이는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예치금 934억 6천 8백만원과 이자수입 19억 5천 4백만원만을 합한 것입니다.

# [표-34] 2024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C=A-B)
[500	00]내5	부거래		-	32,939,059	△32,939,059
	[5100	0]전입	금	-	32,939,059	△32,939,059
		[5110	00]전입금	-	32,939,059	△32,939,059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32,939,059	△32,939,059
[400	00]기E	<u>+</u>		93,468,460	97,451,875	△3,983,415
	[4200	0]예치	금회수	93,468,460	97,451,875	△3,983,415
		[4210	00]예치금회수	93,468,460	97,451,875	△3,983,415
			[42101]예치금회수	93,468,460	97,451,875	△3,983,415
[200	00]자치	베수입		1,953,808	833,840	1,119,968
	[2400	0]이자	수입	1,953,808	833,840	1,119,968
		[2410	)0]이자수입	1,953,808	833,840	1,119,968
			[24101]예금이자수입	1,953,808	833,840	1,119,968
	_	_	수입 합계	95,422,268	131,224,774	△35,802,506

○ 동 기금의 현재 조성 목표액은 1,636억 3천 6백만원으로, 2023년 7월 1일 기준 적립액은 1,593억 6천 8백만원이며 향후 이자수입

만으로 조성 목표액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별도의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35]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성 목표액과 적립금 현황

(단위: 천원)

		조성 목표액 내역	
구분	신청사 (A)	연수원 (B)	계 (A+B)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129,900,000	33,736,000	163,636,000

- u	적립금 현황(2023.7.1. 기준)					
구분	적립액 (A)	지출액 (B)	계 (A-B)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159,368,180	13,912,920	145,455,260			

#### 다. 지출계획

- 2024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954억 2천 2백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418억원, 예치금 536억 2천 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1,312억 2천 5백만원 보다 358억 3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 먼저 2024년도 신청사 건립 비용은 총 41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표-36] 2024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정단세	사업내역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증감
야	문 책 위 부	시티케딕	(A)	(B)	(C=A-B)
[05	60]교육		95,422,268	131,224,774	△35,802,506
	[054]교육일반		95,422,268	131,224,774	△35,802,506
	[02]기관운영		41,799,993	37,756,314	4,043,679

분	부	정	다	세		HALIIA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전위: 전편) <b>증감</b>
분야	문	책	단 위	센부		사업내역	(A)	(B)	(C=A-B)
		[02]교육행정기관시설				정기관시설	41,799,993	37,756,314	4,043,679
				[01	]기관	관시설유지관리	41,799,993	37,756,314	4,043,679
					신경	청사 건립	41,799,993	37,756,314	4,043,679
						설계비	-	13,784	△13,784
						시설비	39,861,841	36,126,704	3,735,137
						감리비	1,770,000	1,471,000	299,000
						시설부대비	168,152	144,826	23,326
		[03	]재두	-활-	동		53,622,275	93,468,460	△39,846,185
			[05	]예기	디금		53,622,275	93,468,460	△39,846,185
				[01	]예기	<b>니</b> 금	53,622,275	93,468,460	△39,846,185
					예기	치금	53,622,275	93,468,460	△39,846,185
	지출 합계						95,422,268	131,224,774	△35,802,506

○ 먼저 2024년도 신청사 건립 비용 중 '**시설비**'의 경우 398억 6 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골조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정률이 급격히 올라감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공사, 관급구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3일 착공식을 진행한 후 터파기 공사 중 불소 (F)가 초과 검출<sup>30)</sup>되어, 용산구청(맑은환경과)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완료 후, 2023년 4월 17일 오염토 반출을 착공하여 2024년 4월 10일까지 토양오염

<sup>30) 「</sup>교육청 신청사 건립·이전 추진계획(안)」(청사이전추진단-373, 2023.8.3.) 오염원인: 지하 화강암이 지하수와 반응으로 인한 불소 용출로 풍화토 등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

반출정화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한 부분도 시설비 증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표-37] 신청사 부지 오염토 조사에 따른 관련 계약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비고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	(재)한국환경 산업연구원	21,780	2023-01-13	2023-01-16	2023-02-24	완료
토양오염 반출정화 공사	㈜에코필	5,627,039	2023-04-14	2023-04-17	2024-04-10	공정률 63% (23.10.31. 기준)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설명하는 토양오염 반출정화공사 계약총액은 56억 2천 7백만원으로, 2024년도에 22억 5천 7백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기금 편성 세부내역에는 2억 8천 1백만원만 반영되어 있는 등 2024년 기금 편성 내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38] 2024년 신청사 건립 기금 편성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내역	집행액	비고
	시설공사(건축)	20,382,460	토목, 기계, 조경 포함
	시설공사(전기)	2,000,000	
	시설공사(통신)	1,500,000	
	시설공사(소방)	2,000,000	
시설비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30,000	신축에 따른 발생 폐기물
	정화공사(오염토)	281,351	
	관급구매(건축)	5,166,876	데크 플레이트, AL창호, AL SHEET PANEL 등
	관급구매(기계)	3,131,703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연 료전지 등
	관급구매(전기)	2,181,850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

구분	세부내역	집행액	비고
	관급구매(통신)	3,187,600	출입통제, 통합배선반, 방 송장치 등
감리비	건설사업관리용역	1,770,000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52,978	관급구매 등
	출장비	20,000	
	공사시공에 필요한 공공요금, 지도·감독 등 부대경비	95,174	
계		41,799,993	

○ 다음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 비용의 지출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신청사 건립비 용으로 377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11월 기준 현재 기금의 지출내역은 34억 9천 5백만원에 불과하며 연내 지출될 예상액은 31억 5천만원으로, 2023년 총 지출액이 66억 4천 5백만원으로 집행률이 17.6%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현재까지 연내 집행되지 못한 금액을 2024년도로 이월31)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불용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 규모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상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2)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sup>31) 「</sup>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u>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u>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u>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u>

<sup>32) 「</sup>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u>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u>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39] 2023년 기금 편성 내역 및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23 지출예정액 포함)
	계	37,756,314	6,645,458
	설계비	13,784	-
세부	시설비	36,126,704	5,971,053
	감리비	1,471,000	650,000
	시설부대비	144,826	24,405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운용계획에 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 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연수원 건립은 20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부적정결과<sup>33)</sup>를 받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2021년, 2022년도에는 연수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차 계속해서 무산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2016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이후 연수원 관련으로 7년째 지출액이 없으며, 2023년에는 연수원 건립계획을 중지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sup>34)</sup>하는 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신규연수원 건립이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면 동 기금이 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용으로 한정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지출계획 수립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up>33) 2019</sup>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sup>34) 「</sup>교직원 치유·회복연수원」건립 재검토 및「교직원힐링센터」구축 추진 방안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청사이전 추진단-986, 2023.9.21.)

# [표-40] 연수원 기금 추진 경과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2015. 9. 8.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회복력지원 연수원'설립 추진 계획
2015. 9. 9.	회복력 지원 연수원 설립을 위한 실무 TF 구성
2016. 3. 24.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계획 수립
2016. 5. 3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출
2016. 7. 7.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공포
2017. 6. 22.	'제주회복력지원연수원' 입지 여건 조사 결과 보고
2017. 7. 3.	'제주회복력지원연수원' 건립부지 검토결과 최종 보고
2017. 8. 28.	제주연수원 부지 매입 및 건축규모 검토 결과 보고
2018. 1. 23.	'제주평화힐링연수원' 설립 기본 계획
2019. 3.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 심사(1차) : 재검토
2019. 7.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 심사(2차) : 조건부 승인
2019. 9. 25.	교육부 중앙재정투자 심사 - (결과) 부적정 :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2019. 11. 14.	심사결과 및 지방교육재정지원투자센터 컨설팅 결과 보고
2020. 7. ~ 8.	교직원치유회복연수원 사업방향 재설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방향 재설정, 프로그램 구성, 물량 산정, 최적 입지 검토
2020. 8.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2020. 8.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건립 유치 제안서 제출
2020. 8.	대체 입지(3곳) 집중 검토 - 평창, 영월, 가평(접근성, 주변 인프라, 자연환경 등 고려)
2020. 8.	대체 입지 확정 - 강원도 평창(평창군의 적극적 행정지원 가능)
2021.	타당성조사용역 무산(霧散)
2022.	타당성조사용역 무산(霧散)
2022.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삭감
2023. 9.	연수원 건립 재검토 및「교직원힐링센터」구축 추진 방안